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56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혜영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서상열, 심미경,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40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민간축제 지원 시 특정 단체의 반복 지원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편중을 방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입증된 축제사업의 연속성까지 일률적으로 제약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반복지원 제한의 형평성 원칙은 유지하되, 성과 우수단체 등 예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민간 축제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 단체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안 제 16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축제의 지원 · 육성) ① ~ ④ (생 략) <u><신 설></u></p>	<p>제16조(축제의 지원 · 육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u> <u>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u> <u>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u> <u>이내, 4회 이상 지원 제한을 원</u> <u>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 우수단</u> <u>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u> <u>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지원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제한 조건설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통상 제한 조건설정은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